온라인 환경의 학생보호를 위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

I 검토배경

- 최근 **코로나19**로 인해 **학생들의 온라인 활동이 증가**함에 따라 아동·청소년들이 **디지털 성범죄***에 **노출**되기 쉬운 환경 등장
 - * 카메라나 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매체를 이용하여 상대의 동의없이 신체를 불법촬영하여 저장. 유포협박 하는 등 사이버공간의 성적 괴롭힘
- 학생들의 올바른 **성인지 감수성 함양**을 위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**교육제도의 혁신적인 변화***가 **필요**하다는 요구가 높은 상황
 - * (사전) 인식개선교육 및 처벌 등의 제도개선 / (사후) 상담 등을 통한 피해자 보호대책 수립
- 이에, 학생들이 온라인 환경에서 디지털 성범죄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「온라인 환경의 학생보호를 위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」 마련 시급

Ⅱ 현황 및 문제점

□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학생 및 교사의 인식개선 교육 미흡

- **청소년들**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**인식이 둔감***하고 범죄로 여기지 않는 등의 모습을 보임에 따라 온라인에서의 디지털 성범죄 지속 발생 * 가해 청소년 중 96%가 디지털 성범죄를 범죄로 인식을 못하고 '큰일이라고 생각하지
 - 못해서'(21%), '재미나 장난'(19%), '호기심'(19%), '충동적으로'(16%) 응답(2021.서울시)
- **교사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**를 위한 **교육 및 연수 등이 부족***하여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**회복적이고 교육적인 관점의 처리에 걸림돌**로 작용
 - * 최근 스쿨미투 등 교사에 의한 2차 피해 문제가 지적되고 있어 교사를 위한 교육·연수 등의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(대검찰청 형사2과 담당자).

□ 가해자 처벌제도 등 대처 미비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지속 발생

-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**형량이 낮고***, 피해자가 만 13세 이상인 경우 **강제성 입중을 못할 시 처벌에 한계****
 - * 최근 6년간 디지털 성범죄로 체포된 피의자 7,466명 중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받은
 경우 단 647명(8.4%)에 불과(2019.여성가족부) / ** 피해자가 만 13세 이상의 경우
 강제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이 어려운 것이 현실(△△매일 2021.5.3.)
- 피해자의 **구제절차와 장치가 부재***하고, 매뉴얼과 같은 처리방안에 대한 상세한 **지침 제공에 소홀****하여 **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구제 노력 부족**
 - * 디지털 성폭력 피해가 발생했을 때 학생들이 안심하고 접근할 수 있는 구제절차와 장치가 필요합니다(국무조정실 교육문화여성정책관실 담당자). / ** 기존의 학교폭력 매뉴얼과 마찬가지로 사례와 지침제공이 필요합니다(교육부 담당자).

□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인프라 확대 미비

- **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의 기능 혁신이 부족***하여 이를 악용한 보호의 사각지대 존재하고 지속적인 범죄 발생
 - * 인력 등의 부족으로 인해 영상, 사진 등의 삭제 지원에만 4만6217건으로 타 지원의 어려움이 발생(2019.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현황 보고)
- **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 성범죄심의 지원단** 같은 조직에 **인력 등이 부족***하여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한계
 - * 모니터링 요원에 비정규직 5명 뿐(2020.방송통신심의 위원회 자료)

Ⅲ 개선방안

□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학생 및 교사의 인식개선 교육 강화

- (학생교육) 초·중등학교 교육과정에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 시수 신설^{*} 및 관련 콘텐츠 개발·보급^{**}('25.上~)
 - * 주당: (초)10시간, (중)20시간, (고)30시간 신설 / ** 전문가 연구용역을 통한 개발 및 수도권 학교 중심으로 보급 시범추진('25,20개교 → '26,30개교)

- (교사교육) 교사의 디지털 성범죄 인식개선 및 대처 역량강화를 위해 예비^{*} 및 현직^{**}교사의 교육·연수 프로그램 개발('25.下~)
 - * (예비교사) 교원임용고시 응시를 위한 필수 이수과목 신설(1학년~4학년 10과목 필수 이수) / ** (현직교사) 방학 중 교사 연수 운영 시 필수 프로그램 신설 시범추진('25.5개 교육청 → '26.10개 교육청)

□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처벌 강화 및 정부 대응 역량 제고

- (제도정비) 디지털 성범죄를 중대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정형량 상향을 추진 하고,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형법의 입증책임의 조항 삭제**('26.上~)
 - * (현행) 5년 이상 실형 → 10년 이상 실형 / **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입증책임을 예외적으로 적용하여 피해자 보호 최선(사건 발생 시 구속수사 원칙)
- (구제장치) 디지털 성범죄 발생 시 학생이 안전하게 보호 받고 신고할 (가칭)디지털 성범죄 신고센터^{*}를 설치하고, 가이드라인** 제작·배포('26.下~)
 - * 수도권 교육청 시범운영: ('27.5개 교육청 → '28.10개 교육청) / ** 전문가 연구용역을 통한 제작·배포(교수, 교사, 학부모 및 학생 참여 등)

□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정부 조직의 혁신적 기반조성

- (지원조직 정비)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혁신적 변화^{*}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발생 최소화 노력('28.上~)
 - * 인력 정원 확대(10명 → 50명) 및 센터의 장은 국무총리가 겸임하고 각 부처 장관의 분기별 회의 진행
- (조직기능 강화)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 성범죄심의 지원단 기능을 보강^{*}하여 조직 본연에 임무에 충실하도록 기능 정비 강화('28.하~)
 - * 모니터링 요원 등 전문인력을 정규직화 하여 조직 기능 강화추진($^{'}$ 28. 10명 \rightarrow $^{'}$ 29. 30명)

Ⅳ 향후 추진계획

- 사회관계장관회의 안건 상정 및 본 계획 확정: '24. 1.
- 각 시도교육감 공청회 및 설명회: '24. 4.
- 대국민 홍보 및 주기적 성과 관리: '24. 8.